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1
----------	-----

제출일자 : 2020. 8. 14.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재)경북장학회를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재단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 내용 변경(안 제1조, 제3조)
- 다. 진흥원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6조)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내용 규정(안 제7조)
- 마. 조직 및 시설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8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5.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법제심사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0. 7. 23. ~ 8. 12.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관련 사업
2. 경북학숙 건립·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 그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및 이사회) ① 진흥원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 조직·정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재)경북장학회와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개편함에 따라 기존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現 경북장학회(경북학숙)의 '20년 道 지원예산(출연금)과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을 기준으로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시 [표 1]과 같이 1차년도 28억 3,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 총143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표 1] 통합에 따른 예산 소요액 : 2020~2025년(5차년도)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530	1,545	1,560	1,575	1,590	7,800
	○ 사업비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 총 비용		2,830	2,845	2,860	2,875	2,890	14,300

※ 조례시행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 없음(기 지원사업)

####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2,830	2,845	2,860	2,875	2,890	14,3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2,830	2,845	2,860	2,875	2,890	14,300

※ 경북학숙 학생부담금(입사비 5만원/월부담금16만원)은 제외한 수치임

#### 5. 부대의견

- 향후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국비공모사업, 후원금, 수익금 등 다양한 경로의 재원을 확보하여 수익구조를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6. 작성자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지방행정주사 강진태 (054-880-4562)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상미 (054-880-4571)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 가. 대 상

- (재)경북장학회와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개편함에 따라 기존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없음.

#### 나. 비용추계 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 '20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8%)을 연도별 적용
- (운영비, 사업비) '20년 경북장학회의 도 출연금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을 적용

○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6,600	1,300	1,300	1,300	1,300	1,300
장학회 (출연금)	1,000	200	200	200	200	200
평생교육진흥원	5,500	1,100	1,100	1,100	1,100	1,100

○ 운영비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7,800	1,530	1,545	1,560	1,575	1,590
장학회 (출연금)	인건비	2,775	537	546	555	564
	일반 운영비등	2,830	566	566	566	566
평생 교육 진흥원	인건비	1,895	367	373	379	385
	일반 운영비등	300	60	60	60	60

※ (재)경북장학회 출연금(2020년 본예산기준) : 1,303백만원

- 경북학숙운영비 1,103백만원(인건비 537, 일반운영비 229, 학생급식비 337)
  - 직원 14인에 대한 인건비 : 537백만원(기본급,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 경북학숙특성화프로그램운영 200백만원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2020년 본예산 기준) : 1,526백만원

- 운영지원 : 426백만원(인건비 367, 일반운영비 59)
  - 직원 7인에 대한 인건비 : 367백만원(기본급,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 사업지원 : 1,100백만원

## 2. 비용추계시 중점 고려사항

- (재)경북장학회와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개편함에 따라 기존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없음.